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초구 방배동 875-2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울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접근편의성 향상을 위한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입구 일대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서초구 방배동 874 일대	6,176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1993.3.24.)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인한 철도 면적 변경
변경	철도	도시철도	서초구 방배동 874 일대	6,234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 도	• 면적변경 : 증) 58m ² - 6,176m ² → 6,234m ² (당초 면적의 0.94% 변경) ^{주)}	• 원활한 지하철 접근을 고려한 지하철 출입구(에스컬레이터) 신설로 이용시민의 도시철도 접근편의성 향상에 따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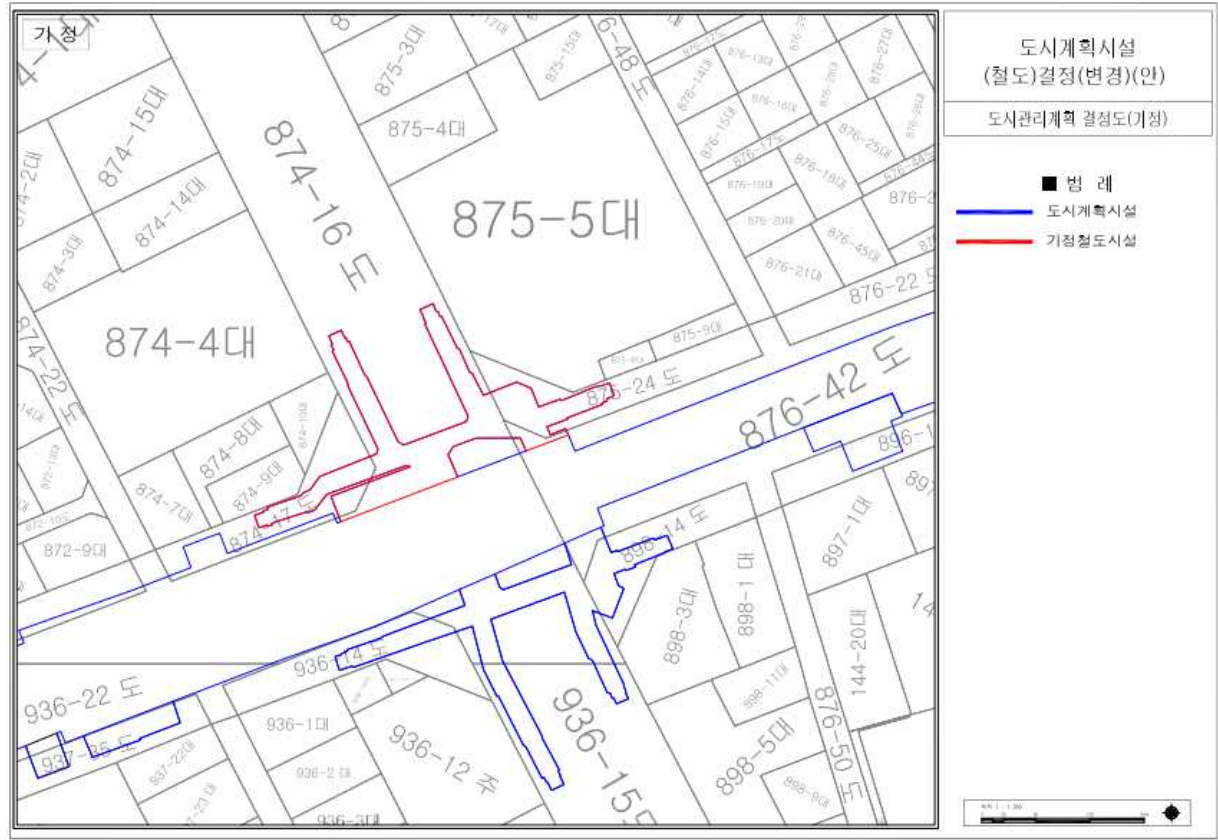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